

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처분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 사업 참여 중단 및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대한 처분 결정 통보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15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- 건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결정 알림 공시송달
- 근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공시송달 내용
진0섭	1977. 12. 3.	의정부시 낙양동 (이하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관련 처분 결정 통보	유선 및 출석통지 2회에도 상담에 응하지 않아 수급자격 인정 철회에 대한 처분 결정 통보	동 서류를 2021년 6월 1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가(폐문 부재)

- 공고기간 : 2021. 6. 15 . ~ 2021. 6. 29.(15일간)
-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조재성(Tel. 031-828-087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